

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지정번호			
기관·단체명		대표자 성명	
사무소 주소			
전문인력 양성 분야·내용			

「한식진흥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·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

